

제27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(2022. 3. 23.)에서  
의결된 무안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을  
이에 공포한다.

2022. 3. 24.

무안군의회 의장



김재현

무안군의회 규칙 제2022-6호

덧붙임 : 무안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.

## 무안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

무안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무안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”을 “무안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의회의원”을 “무안군의회 의원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지방의회의원”을 “무안군의회 의원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.

④ 신분증에는 발급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직접회로 칩에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「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4조 중 “당해 지방의회 의장”을 “무안군의회 의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6월이내”를 “6개월 이내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의 시행 이전에 발급된 의원 신분증은 이 규칙에 따른 신분증으로 본다.

[별표] <전문개정>

무안군의회 의원 신분증(제3조제1항 관련)



1. 위의 ① ~ ⑰까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.

<앞 면>	
①	무안군의회 마크
②	사 진(30mm × 40mm)
③	한글성명
④	영문성명
⑤	의 회 명(무안군의회)

<뒷 면>	
⑥	발급번호
⑦	제목표기(의원증)
⑧	소 속(무안군의회)
⑨	성 명
⑩	생년월일
⑪	임 기
⑫	증명내용
⑬	발급연월일
⑭	발급기관장 명의(무안군의회회장)
⑮	발급기관장 직인
⑯	소재지 안내 및 전화번호
⑰	의회 회장 배경바탕

2.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.

3. 색도는 다음과 같다.

가. 파랑색 : R(80), G(80), B(255)

나. 회 색 : R(190), G(190), B(190)

다. 노 랑 : R(254), G(233), B(4)

라. 의회휘장 배경바탕 : R(255), G(255), B(255)

※ ( )의 숫자는 어도비 포토샵 컬러임.

4. 인쇄사양은 옅색 및 실크인쇄로 한다.

5.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무안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<u>지방의회 의원</u>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(이하 “신분증”이라 한다)의 규격, 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칙은 <u>지방의회의원</u>에게 적용한다</p> <p>제3조(신분증규격, 서식 및 색상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<u>무안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<u>무안군의회 의원의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2조(적용범위) ----- <u>무안군의회 의원</u>-----</p> <p>제3조(신분증규격, 서식 및 색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③ <u>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같음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신분증에는 발급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직접회로 칩에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「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</u></p>

제4조(신분증의 발급권자) 신분증  
은 당해 지방의회 의장 (이하  
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발급한다.

제5조(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)

- ① (생략)
-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  
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 
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.
- ③ (생략)

제4조(신분증의 발급권자) -----  
-- 무안군의회 의장-----  
-----.

제5조(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-----  
-----
- 6개월 이내-----.
- ③ (현행과 같음)